
2011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2. 01.

건 국 대 학 교

머 리 말

1. 「2011년 학문단위 평가 편람」은 건국대학교가 2011년 자체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문단위 평가'의 개요, 평가지표, 평가자료 작성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발간한 자료입니다.
2. 평가위원과 실무진은 이번 평가로 대학이 비전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난 7년간 축적해온 학문단위 평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및 평가시행 절차에 대한 개선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3. 2011년 학문단위 평가는 대학의 전체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함)를 평가대상으로 하고, 2010년 시행한 동 평가의 배점과 지표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학과의 평가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학과가 작성하는 부분을 최소화였고, 가급적 정량지표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 각 평가영역(부문) 별 평가지표 및 작성부서에 관한 세부내용은 '학문단위 평가지표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기획조정처 평가분석센터 곽우순
(02-450-4186, woosoon@konkuk.ac.kr)

1. 학문단위 평가의 개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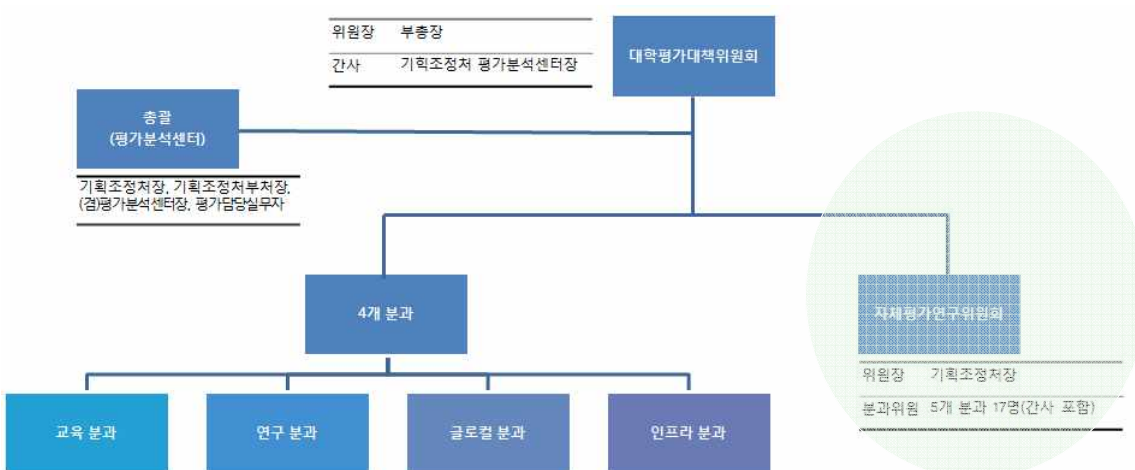
1-1. 학문단위 평가의 목적

학문단위 평가제도는 성·신·의를 교시로 한 건국대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교육과 연구, 봉사라는 대학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대학의 기초 단위인 학과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우수한 학문단위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학문단위 평가는 대학 내 전체 학문단위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대상 학문단위는 계열별 또는 유사 영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2. 학문단위 평가의 운영 조직

‘2011년 건국대학교 자체평가’의 하위영역으로 학문단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학평가대책위원회 산하에 자체평가연구위원회(학문단위 분과)(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로 하여금 평가지표 수립에 관한 전반을 관장토록 하였다.

(1) 위원회의 조직체계



(2)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이 위원회는 당해 연도 기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분과별 평가방안 및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등의 기능을 갖는다.
- 이 위원회는 간사를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 기획조정처 산하 평가분석센터는 이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한다.

(3) 평가대상 학문단위(학과)

- 개별 학과는 학문단위 평가를 대비하여 학과 주임교수를 중심으로 평가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평가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
- 학과는 기관평가 편람 및 평가기준을 숙지하여 해당 분야의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작성본을 위원회에 제출하며, 평가내용을 확인하는 업무에 협조한다.

1-3. 학문단위 평가의 절차

학문단위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4개 단계로 시행한다.

(1) 1단계 : 평가 대상 학과의 선정

- 학문단위 평가는 대학의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설 학과나 학제의 개편에 따른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순위는 산정하지 아니하되, 개별 평가가능 지표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학문단위 평가의 계열 구분은 인문계열, 사회계열, 이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로 구분하되 학과의 소속계열의 구분은 교무처의 '2011학년도 대학(원) 학과의 계열구분'기준에 따른다.

(2) 2단계: 학과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학문단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학과는 위원회의 평가 편람 지침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속대학 학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제출한다.
-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평가편람 상에 명기된 ‘해당학과 작성’이라고 표기된 평가지표만 작성하되 평가지표별 작성 요령은 해당 평가지표의 설명에 따른다.
- 평가지표 중 해당 행정부서에서 취합한 평가 자료에 대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원할 경우, 이를 위원회에 요청하면 위원회는 열람목적의 적합성을 심의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3) 3단계: 보고서 및 평가 자료에 대한 평가 실시

- 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 및 해당 행정부서에서 취합된 평가자료를 평가기준에 맞게 평가하고, 아울러 확인 또는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상 학과를 방문하거나 해당 행정부서의 담당자를 면담할 수 있다.

(4) 4단계: 평가결과의 확정

- 평가분석센터는 위원회에서 산출한 개별 학과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확정한다.
- 평가분석센터는 총장의 결재로 확정된 평가결과를 해당 대학 및 학과에 통보한다.

1-4. 학문단위 평가 결과의 활용

- 학문단위 평가의 결과는 대학교육의 수월성과 책무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대학은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학과의 특성화 전략 수립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한정된 자원의 차등적 배분을 통하여 효율성을 갖춘 자원배분 시스템을 정착 시키고자 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문단위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학문단위에 대해서는 향후 우수한 학문연구와 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학과에 대한 대학 당국의 차등 지원이 학과 간 교육여건의 차이를 심화시키고 고착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따라서 우수한 학과에는 보상적 지원을 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학과에는 그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을 전제로 발전 기반 조성 차원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교육과 연구체제를 경쟁력과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구성하는 기본적인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 주요 기관별 평가결과의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본부

- 평가결과는 대학 본부가 학과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정책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자료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겐 재정적 지원과 학과에 대한 자율성의 부여 등이 있다.

(2) 단과대학 및 학과

- 평가결과는 단과대학 및 학과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활동에 유익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 단과대학 및 학과의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 교육의 내실화 및 연구실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신입입생 선발, 단과대학 및 학과 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에 대한 동기부여 등이 가능하다.

2. 2011 자체평가 시행 내역

2-1. 관련규정

-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
- 자체평가규정 제3조 내지 제4조

2-2. 목적

- 각종 대외평가에 대비하고자 객관적·정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대학의 역량을 점검함
- 학과(전공)(이하 “학과”)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함
- 학과 스스로 자기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

2-3. 평가결과의 공개

- 각 계열 1위 ~ 3위 : 평가결과를 공개함
- 개별 학과 : 해당 학과의 자료만 제공함

2-4. 평가결과의 활용

-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학과 간 자율경쟁체제를 유도함
- 개별 학과의 평정결과를 계열 1위 ~ 3위 학과의 평정결과와 상호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과 스스로 자기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

2-5.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세부지표	작성부서	
1. 교육과정 특성화영역(100)	1.1. 교육과정 특성화/혁신 (100)	1.1.1 교육과정과 관련된 특성화계획(50)	해당학과	
		1.1.2 교육과정 혁신 내용(50)	해당학과	
2. 연구영역 (400)	2.1 교수의 연구 (400)	인문사회 계열	2.1.1 교수 1인당 국내외 연구논문 발표실적(200)	연구지원팀
			2.1.2 교수 1인당 교외 연구비 수혜실적(100)	산학관리팀
			2.1.3 교수 1인당 저술(저서, 역서 포함) 실적(100)	연구지원팀
	자연이공 계열	2.1.1 교수 1인당 국내외 연구실적(저술실적포함)(150)	연구지원팀	
		2.1.2 교수 1인당 교외 연구비 수혜실적(70)	산학관리팀	
		2.1.4 학과 논문 당 인용 수(50)	해당학과	
		2.1.5 교수 1인당 impact factor 분야별 상위 20% 논문 수(50)	해당학과	
	예체능 계열	2.1.6 교수 1인당 특허출원/등록/기술이전 실적(80)	산학기획팀	
		2.1.1 교수 1인당 국내외 연구실적(저술실적포함)(350)	연구지원팀	
		2.1.2 교수 1인당 교외 연구비 수혜실적 (50)	산학관리팀	
3. 교육영역 (300)	3.1. 교수의 강의 (50)	3.1.1 최근 1년간 강의평가 결과(50)	교수학습 지원센터	
	3.2 전공만족도 (100)	3.2.1 학생의 중도 탈락율(50)	SMART 교육혁신팀	
		3.2.2 최근 1년간 해당 학과 학생의 타전공으로의 전과율(25)	SMART 교육혁신팀	
		3.2.3 최근 1년간 해당 학과를 선택한 다전공학생 수(25)	SMART 교육혁신팀	
	3.3 학업성취도 (100)	3.3.1 최근 1년간 졸업생 취업률(100)	취업지원팀	
3.4 학생활동 (50)	3.4.1 최근 1년간 학생의 학술대회 논문발표 및 교내외 공모전 수상실적(50)	해당학과		
4. 글로벌영역 (100)	4.1 외국 대학과의 교류 (40)	4.1.1 최근 1년간 해외파견 교환학생 및 단기파견학생 비율(15)	국제교류팀	
		4.1.2 최근 1년간 본교방문 외국인 교환학생 및 단기파견학생 비율(15)	국제교류팀 외국인서비스센터	
		4.1.3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 및 외국인 학생의 다양성	-	
		4.1.3.1. 최근 1년간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5)	국제교류팀	
		4.1.3.2. 외국인 학생의 출신 국가 수(5)	국제교류팀	
	4.2 국제 인프라 (60)	4.2.1 최근 1년간 외국인 교수(전임/비전임 포함) 비율(15)	교무팀	
4.2.2 최근 1년간 외국인 교수의 연구실적(15) (1인당 SCI(E), SSCI, A&HCI급 및 학진등재지 논문)		연구지원팀		
4.2.3 최근 1년간 외국어강좌 비율(30)		SMART 교육혁신팀		
5. 인프라영역 (100)	5.1 재정 (100)	5.1.1 최근 1년간 재정공헌도(50)	재무팀	
		5.1.2 최근 1년간 기부금 유치 실적(50)	모금전략팀	
합계	1,000점	23개 평가지표		

- 평가대상기간 : 최근 1년간 (2010. 1. 1 ~ 2010. 12. 31)

2-6. 평가시행 경과

구분	일자 / 기간	내용
평가기준 마련	2011.06.29.~09.21.	제1차~제6차 자체평가연구위원회(학문단위분과)에서 평가기준, 평가방법 선정
학과의견 수렴	2011.10.11.~10.21.	평가편람에 대한 학과의견 수렴
평가편람 확정	2011.10.21.	평가편람 확정
평가서 작성	2011.12.02.~12.23.	학과(전공) 및 행정부서에서 평가서 작성
평가편람 재확정	2012.01.02.	제 7차 자체평가연구위원회(학문단위분과) 서면결의를 통하여 평가계열 일부 수정
평정 및 결과 검토	2012.01.02.~01.20.	자체평가연구위원회(학문단위분과) 및 총괄분과에서 평정 및 결과 검토
평정결과 확정	2012.01.31.	평정결과 확정

2-7. 평정위원(자체평가연구위원회(학문단위분과) 위원)

직위	성명	보직/전공/직급	최초위촉일
위원장	유재원	기획조정처장	2010.09.01.
위원	곽진영	기획조정처부처장 (겸)평가분석센터장	2010.05.11.
위원	유병민	교무처부처장	2010.09.01.
위원	권남훈	상경대학 경제학전공 부교수	2011.06.20.
위원	김동은	대학원 생명공학과 부교수	2011.06.20.
위원	윤경로	정보통신대학 컴퓨터공학부 부교수	2011.06.20.
위원	황진숙	예술문화대학 의상디자인 전공 교수	2011.06.20.
간사	곽우순	기획조정처 평가분석센터	2011.09.01.

- 이상 8명 -

2-8. 자체평가연구위원회(총괄분과) 위원

직위	성명	보직/전공/직급	최초위촉일
위원장	유재원	기획조정처장	2010.09.01.
위원	곽진영	기획조정처부처장 (겸)평가분석센터장	2010.05.11.
간사	양인	기획조정처 평가분석센터	2010.09.01.

- 이상 3명 -

3. 2011 평가결과

3-1. 평가결과(종합)

계열	평가대상 학과(전공)	2011 순위		
		1위	2위	3위
인문사회	28	정치대학 부동산학과	이과대학 지리학과	경영대학 경영학전공
자연이공	29	공과대학 화학공학전공	본부대학 특성화학부 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공학전공
예체능	10	예술문화대학 영화전공	예술문화대학 텍스타일디자인전공	

3-2. 평가결과(영역별)

계열	인문사회			자연이공			예체능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1위	2위
종합	부동산학과	지리학과	경영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생명공학전공	동물생명공학 전공	영화전공	텍스타일디자인 전공
1영역	부동산학과	행정학전공	경영학전공	환경공학과	항공우주정보 시스템공학과	동물생명공학 전공	의상디자인전공	텍스타일디자인 전공
2영역	부동산학과	철학과	교직과	화학공학전공	생명공학전공	축산식품생물 공학전공	영화전공	텍스타일디자인 전공
3영역	부동산학과	경영학전공	소비자정보학 전공	기계공학부	전자공학부	화학공학전공	체육교육과	음악교육과
4영역	영어영문학과	교육공학과	국제무역학전 공	토목공학과	분자생명공학 전공 항공우주정보 시스템공학과	동물생명 공학과 응용생물과학 전공	음악교육과	영상전공
5영역	법학과	경영학전공	경제학전공	전기공학과	화학공학전공	환경공학과	영상전공	텍스타일전공

4. 2011 평가결과 분석

4-1. 계열별 주요 순위 학과의 득점 비교

- 계열 1위와
 - 계열별 2위 ~ 3위
 - 계열평균
 - 계열 영역별 1위 ~ 3위

간 득점 비교

* 별첨4 : 계열별 주요 순위 학과의 득점 비교

4-2. 분석

[분석 1]

“연구 및 교육영역의 득점이 종합순위를 결정함”

- ① 영역2(연구)에서 계열 1위를 한 학과는 계열 종합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함
 - 상대평가로 인하여 계열전체 1위와 영역 2위 및 3위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드러남
 - 연구부문의 우수성이 학과평가의 핵심 지표임을 알 수 있음
- ② 자연이공계와 예체능계열에서는 영역2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전 영역에 걸쳐 평균값 이상인 학과가 2위 및 3위를 차지함
- ③ 학과 연구실적의 절대량(1인 당 일정수준 이상의 실적)이 뒷받침 되어 있어야 영역2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음

[분석 2]

“상대평가 방식으로 동일계열 학과간의 비교우위를 평가함”

[예시 : 계산법]

㉔ 학과 교수 1인당 실적을 산출한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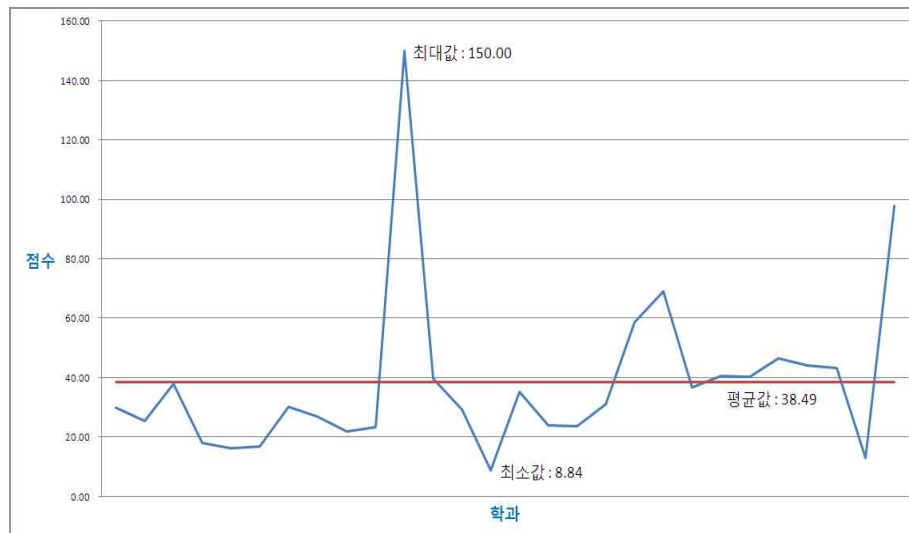
평가대상 계열내의 최고점을 받은 학과에 만점을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함

㉕ (해당학과 실적 / 계열별 최고 실적) × 지표별 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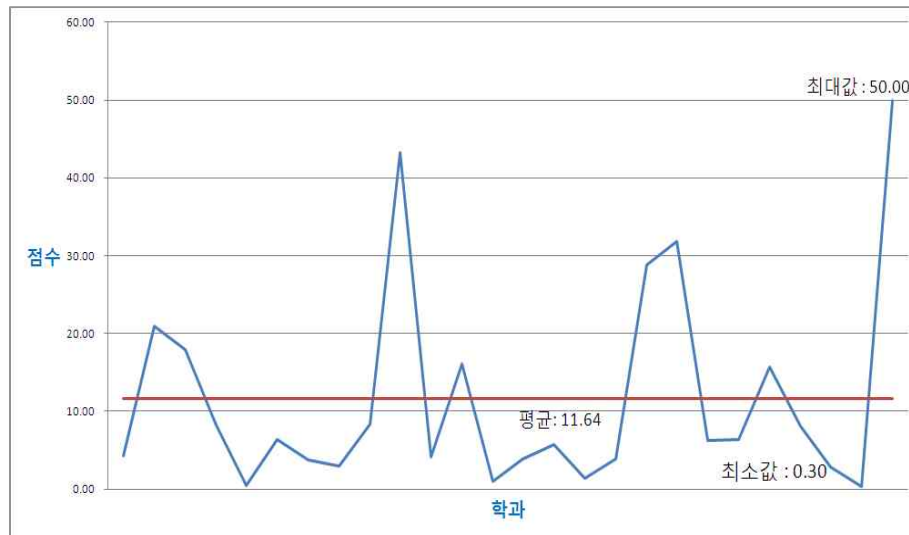
① 상대평가의 비중이 전체 평가 지표의 23개 중 12개 (52%)를 차지

② 상대평가에 따른 점수분포 : 최고점과 최저점간 점수격차가 큼

■ 예시 1 : 자연이공계열 2.1.1. 지표(학과별 교수 1인당 국내외 연구논문 발표 실적)의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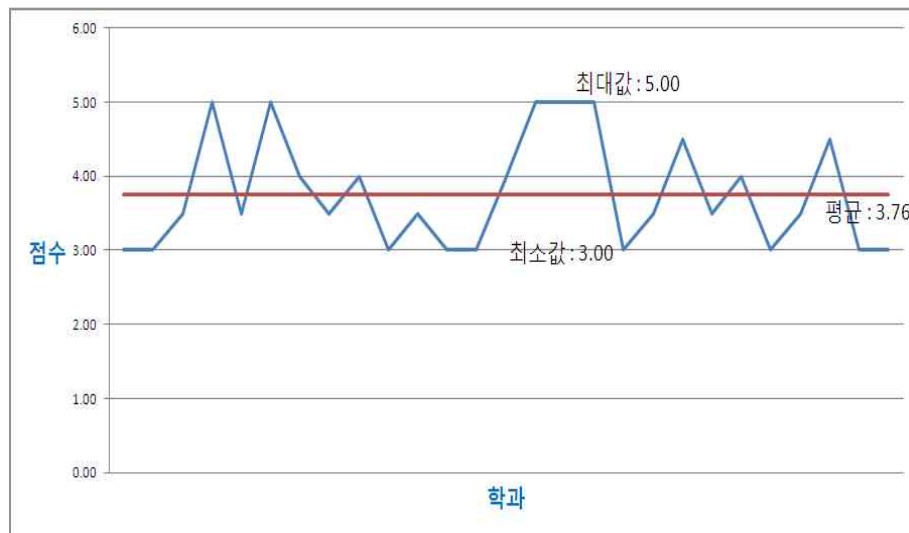


■ 예시 2 : 자연이공계열 2.1.4. 지표(학과 논문 당 인용수)의 점수 분포



③ 절대평가를 한 지표의 경우 : 최고점과 최저점간 점수격차가 적음

■ 예시 3 : 자연이공계열 4.3.1.1지표(최근 1년간 학위과정 등록 외국인 학생 비율)의 점수분포



[분석 3]

“배점 비중이 축소된 글로벌(국제화)영역의 영향력은 미비함 ”

① 영역4(글로벌)의 평가비중을 축소한 결과 (2010년 300점 ⇒ 2011년 100점) 계열 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는 다음과 같음.

계열	2010	2011
인문사회	125	65.5
자연이공	81.8	55.61
예체능	66.2	34.39

② 영역 4의 경우 계열별 학과의 취득점수가 전반적으로 평균값 부근에 몰려 있어 전체 순위 결정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 했음

- 예시 : 자연이공계열 영역4(글로벌)의 학과별 취득점수 및 평균값



[분석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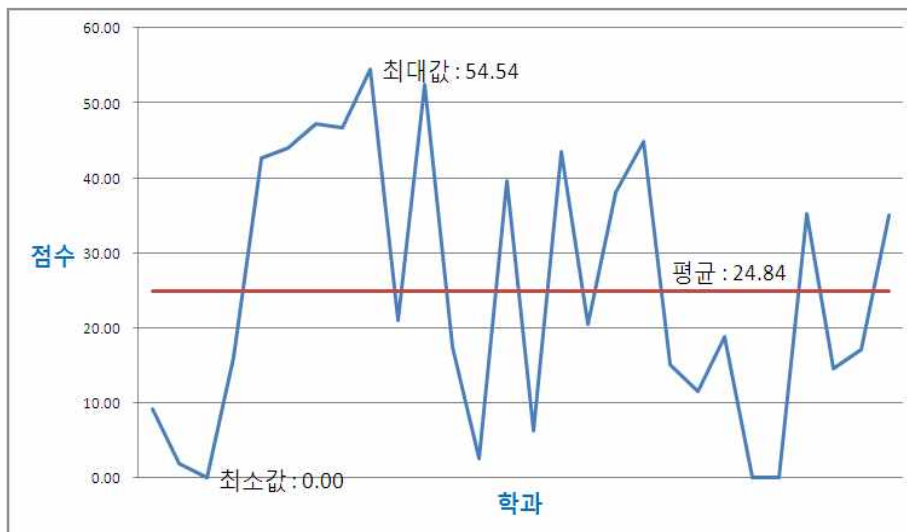
“재정영역의 영향력은 미비함

- ① 영역 5(재정)의 평가비중을 높인 결과(2010년 70점 ⇒ 2011년 100점) 계열 내 최고점과 최저점의 격차는 다음과 같음

계열	2010	2011
인문사회	45.5	50.93
자연이공	54	53.5
예체능	45.5	50.02

- ② 영역5의 경우 계열별 학과의 취득점수 편차는 크지만 전체 순위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했음

- 예시 : 자연이공계열 영역(인프라)5의 학과별 취득점수 및 평균값



[별첨] 자체평가 규정

제정 2009.9.29. 3차 개정 2011.8.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제도의 절차와 방법 및 운영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체평가라 함은 본교의 교육 · 연구, 조직 · 운영, 시설 ·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학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구성) 본교의 자체평가는 학문단위평가와 행정단위평가 그리고 교직원개인평가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8.9.)

제4조(평가지기) 자체평가는 매 2학기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8.9.)

제5조(평가대상) ① 학문단위평가는 모든 단과대학의 학과 및 전공, 학부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8.9.)

② 행정단위평가는 대학본부 행정부서, 대학 및 대학원 행정실, 도서관, 산학협력단, 부속(부설)기관 행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8.9.)

③ 교직원개인평가는 교원 및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8.9.)

④ 기타 필요한 경우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8.9.)

제6조(평가수행부서) ① 자체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기획조정처 평가분석센터(GLOCAL(글로컬)캠퍼스는 기획조정처 기획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직원 개인평가 중 교원평가는 교무팀이, 직원평가는 인사팀(GLOCAL(글로컬)캠퍼스 총무팀)이 각각 수행한다.(개정 2011.4.15., 2011.5.16., 2011.8.9.)

② <삭 제(2011.8.9.)>

제2장 자체평가 위원회

제7조(평가 위원회의 구성) 자체평가의 공정한 시행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대학평가대책 위원회 산하에 자체평가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8.9.)

제8조(자체평가 기획위원회) <삭 제(2011.8.9.)>

제8조의2(대학평가대학위원회) ①대내외 평가 전반에 대한 기획 및 관리를 위하여 대학평가대책위원회를 둔다.(신설 2011.8.9.)

②위원 및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한다.(신설 2011.8.9.)

③위원은 간사를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신설 2011.8.9.)

④위원에게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8.9.)

제9조(자체평가연구위원회) ①평가대상별 자체평가 시행을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8.9.)

②연구위원회에는 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과의 종류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1.8.9.)

③위원 및 위원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1.8.9.)

④위원은 간사를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개정 2011.8.9.)

⑤연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분과별 평가 방안 및 평가 지표 개발

2. <삭 제(2011.8.9.)>

3. <삭 제(2011.8.9.)>

4.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⑥연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8.9.)

⑦연구위원회 위원에게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1.8.9.)

제3장 평가운영 및 기타

제10조(평가방법) 평가수행부서는 연구위원회에서 개발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한다.

(개정 2011.8.9.)

제11조(자료의 제출) 평가수행부서는 피평정대상자(기관)에게 평가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평정대상자(기관)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개정 2011.8.9.)

제12조(평가위원의 준수사항) 연구위원회는 대학의 정책방향 및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여 평가와 관련된 제반 임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습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8.9.)

제13조(이의신청) ①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평정대상자(기관)는 평가결과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획조정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1.8.9.)

②연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1.8.9.)

제14조(평가결과보고) <삭 제(2011.8.9.)>

제14조의2(평가결과의 확정) 자체평가의 결과는 평가수행부서가 작성한 평정서를 참고하여 총장이 정한다.(신설 2011.8.9.)

제15조(평가결과 공시 및 활용) ①평가결과는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공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8.9.)

②평가결과의 공시내용 및 공시범위, 활용방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8.9.)

③자체평가 결과 우수 학문단위, 행정단위 및 교직원으로 선발된 자(기관)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8.9.)

제16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5.)

이 개정 규정(제6조제1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16.)

이 개정 규정(제6조제1항)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8.9.)

이 개정 규정(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제2호, 제3호, 제6항, 제7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은 201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